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50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관련한 고시의 ①시험 운영 기간 연장 ②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고시 개정 추진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

2. 주요 내용

가. 시험 운영기간 연장(검정시험 운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 2021. 5. 1.~2024. 4. 30.(3년) ⇒ 2024. 5. 1.~2027. 4. 30.(3년)

나. 법제처 권고 사항 반영

- 약칭 사용 수정(목적조항 약칭('시행령') 삭제, 이하 약칭 수정('시행령' → '영')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9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 정비
('위탁' , '수탁' → '운영')

3 의견제출

- 기간: '24. 4. 19.(금) ~ 4. 29.(월)
- 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화: 044-203-2530, FAX: 044-203-3467
- 전자우편: mercury14@korea.kr